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 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cc에서 3천cc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및 감면요건 완화(개정안 제17조제1항)

개정안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cc 이하에서 3천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²⁾.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동차세와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차량을 보유·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238면, 삼일인포마인, 2022

인 장애인³⁾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으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를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2,000cc 이상인 경우 대형자동차로 구분되고, 다른 감면과 달리 그 동거가족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현재도 동거가족이 사실상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에 직접 공여하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요건을 배기량 3,000cc로 상향하면, 장애인용 자동차로 승용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3000cc 이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철장구의 운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감면되는 금액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등의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

3)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2년판) 243면, 삼일인포마인, 2022

기준을 현행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849억원(연평균 1,7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 등(개정안 제29조제4항)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cc에서 3천cc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① 국가유공자⁵⁾, ② 보훈대상자⁶⁾, ③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⁷⁾,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가 있음.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음.

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의미함.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지원대상자

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성격을 가짐.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부상을 입고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보유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요건을 배기량 3,000cc로 상향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승용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3000cc 이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철 장구의 운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률 규정의 연혁적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승용차의 요건에 대한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대형 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철·생업용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현행 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감면 요건을 완화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061억원(연평균 4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